

2023강원세계산림엑스포 「산업교류관」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청정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품을 비롯해 목재/목재가공품 및 산림레저(등산, 캠핑, 산악스포츠 등)등과 관련된 산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산업교류관」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산림산업 관련 기업·기관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장

1. 엑스포 개요

- 가. 행사명 :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Gangwon Forestry Exhibition 2023)
- 나. 주 제 :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 다. 기 간 : 2023. 9. 22.(금) ~ 10. 22.(일) / 31일간
- 라. 장 소 : [주행사장] 강원세계잼버리수련장(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714-2 일원)
[부행사장] 고성(DMZ박물관), 속초(설악산 자생식물원),
인제(만해마을 관광단지),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
- 마. 주최·주관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 바. 후 원 : 산림청, 한국수력원자력, 산림조합, NH농협은행, WESTWOOD, EIR COSMETIC
- 사. 행사 규모
 - 관람객 목표 : 132만명(내국인 1,254,000명, 외국인 66,000명)
 - 주 요 내 용 : 주제전시 및 산업전시(온·오프라인), 힐링광장, 엑스포 정원, 공식행사, 공연 및 체험행사, 관광, 학술회의 등
 - 산업교류관 : [주행사장] 면적 2,400㎡ / 규모 (기업)약 100개사 이상 200부스

2. 산업교류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1) 전기간 : 2023년 9월 22일(금) ~ 10월 22일(일) / 31일간
- 2) 단기간 : 총 4회차로 교체 전시 ※ 참가규모에 따라 참가기간 변경 추진
 - 1회차 : 2023년 9월 22일(금) ~ 9월 28일(목) / 7일간
 - 2회차 : 2023년 9월 29일(금) ~ 10월 6일(금) / 8일간
 - 3회차 : 2023년 10월 7일(토) ~ 10월 14일(토) / 8일간
 - 4회차 : 2023년 10월 15일(일) ~ 10월 22일(일) / 8일간

※ 유의사항

- 전기간(31일) 신청은 독립부스 신청 기업만 가능
 - * 단 참가 경력 및 부스 시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1~2회차 일부 부스는 특별관으로 운영
- 연속 회차는 최대 2회차 [1~2, 3~4회차 중 택일(15~16일)]

나. 면적 : 2,400㎡ (40m×60m)

다. 규모 : (기업)약 100개사 200부스

라. 운영방식 : 엑스포 기간(31일) 참가기업의 기간별 교체·전시

마.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참가기업 선택사항)

- 이벤트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주최측의 사정 및 참가기업 규모 등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가. 산림산업관련 기업 및 기관

*운영기준 제3조 및 브로슈어 참조

- 등산·캠핑 등 산림레저 분야, 청정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분야(산림 바이오 식품 및 화장품), 목재 및 목재가공품 분야, 스마트 산림 분야, 친환경 분야

나. 산림관련 연구/지원 기관 및 단체, 친환경 인증 관련 기업 등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1) 신청접수 : 공고일로부터 ~ 2023년 5월 31일(수)

※ 부스(Booth)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참가 서류(적격)심사 이후 부스 소진 여부에 따라 추가모집 할 수 있음

2) 서류심사 : 신청서류 심사 후 최종 참가기업 확정

나. 신청방법

1)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 : 인증·허가서 사본 각 1분

※ 독립부스 참가 시 : 참가이력 및 관련 부스 사진, 부스 시안 각 1부

2) 접수방법 : 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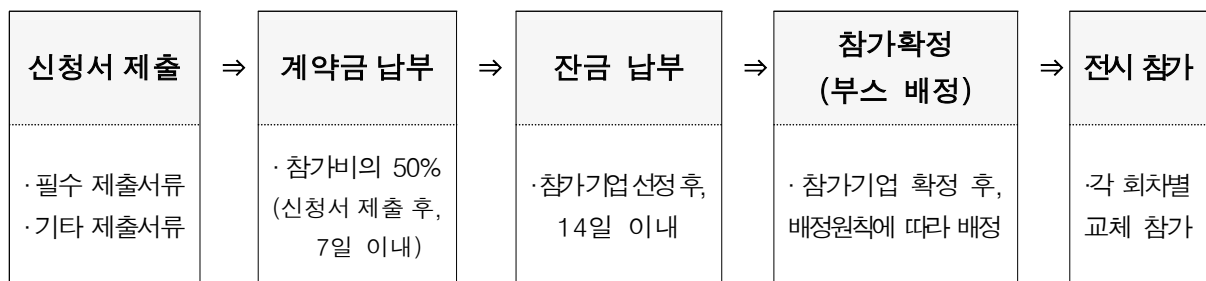
- 이메일 : exhibition@gwfe.or.kr

5. 참가비 및 참가절차

가. 참가비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규격	참가비			비고
		총 참가비	계약금	잔금	
기본부스	9㎡(3×3)	1,500,000원	750,000원	750,000원	부스면적 + 기본장치 제공
독립부스	9㎡(3×3)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바닥 면적만 제공

나. 참가 절차



다.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구성 후, 선정심의(적격심사)

- 참가기업 제품의 주요품목 엑스포 산업교류관 부합 여부 판단
- 참가기업별(B2B, B2C) 조사 및 분류 검토
- 품목에 대한 인증 및 허가서 확인(기능식품, 화장품 인증 등)
- 독립부스 참가이력 및 부스 사진, 부스 시안 검토 ※ 독립부스 참가기업

6. 유의(참고) 사항

가. 전시·판매 품목은 산림산업관련 제품 등 산업교류관 운영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함.

나. 부스규모, 참가기간은 전시·품목 등 산업교류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함.

다. 참가지는 조직위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부스를 전대 또는 양도 할 수 없음.

라. 참가확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조직위의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참가신청서, 산업교류관 참가규정 및 운영 기준, 산업교류관 참가안내서(브로슈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대외협력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가규정

제정 2021. 1. 15.

일부개정 2021. 11. 12.

일부개정 2022. 9. 20.

일부개정 2022. 12. 20.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참가자란 본 엑스포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및 조합, 업체 등을 말한다.

② 엑스포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말한다.

③ 주관자란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말한다.

④ 주관대행사란 주관자와의 계약에 의거, 주관자를 대신해 과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참가신청) ① 엑스포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자가 제작한 별지 제1호 서식 참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엑스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전시부스 배정) ① 주관자는 전시 목적, 전시규모, 전시 구성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부스배정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

② 주관대행사는 참가신청 단체에 대하여 품목군별, 참가규모별, 참가 계약순에 따라 참가자의 부스배정 초안을 마련하며 주관자가 부스배정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③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엑스포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참가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4조(전시부스 관리) ① 주관대행사는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확정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운영 매뉴얼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주관대행사는 참가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참가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주관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해당 행위의 중지, 반출 또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참가자는 이러한 요구를 즉시 이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1. 참가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품목과 상이한 다른 품목으로 전시하는 경우
 2. 참가자가 엑스포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참가자가 주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직매(현장판매 등)하는 경우
 4. 참가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콘셉트와 상이한 콘셉트로 연출, 엑스포의 성격에 맞지 않게 전시를 추진할 경우
 5. 참가자가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한 경우
- ④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는 전시목적,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참가자는 주관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 ⑥ 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참가비 납입조건) ① 참가자는 일정금액의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참가자 선정 후 14일까지 참가비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단 2023년 6월 1일 이후 참가신청을 한 참가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전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가 지정한 기간 내 참가비를 납부 하지 아니 할 경우 주관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 후 참가비를 주관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하며, 부스 규격 및 가격(부가가치세 별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기간에 따른 부스 가격의 차등은 없다.(납입 계좌번호 : 참가신청서 참고)

구분	규격	참가비		비고
		참가비	계약금	
기본부스	9㎡(3*3)	1,500천원	750천원	
독립부스	9㎡(3*3)	1,000천원	500천원	

- ④ 주관자는 참가독려 및 공공성과 엑스포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참가비를 일부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⑤ 참가자가 계약금 납부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참가자가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참가자의 계좌로 반환한다.

제6조(계약, 변경 및 위약금) ① 참가자 사정에 의한 참가 취소는 주관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취소 시점에 따른 참가 취소 위약금이 발생한다.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 2023년 5월말까지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납부
- 2023년 6월말까지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3년 7월부터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② 참가자 및 주관자의 사정에 따른 참가비 반환 시 환불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③ 참가자가 기한 내 참가비(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참가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입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② 참가자는 주관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용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서 작성 시 전기료의 일정용량 이상(1kw) 사용은 참가자가 납부 한다.

제8조(장치 및 전시품 반출) ① 주관대행사는 현장에서 참가자의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② 참가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품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는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② 참가자는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자사부스 장치물 및 전시품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가 진다.

③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화재예방 의무)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②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기준) ① 주관자는 필요할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세부기준은 참가 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의 의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참가자는 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가 부담 한다.

제13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해 주관자와 참가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주관자의 해석이 우선하되,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4조(엑스포의 변경 및 참가비 반환) 엑스포 개최를 취소하거나 행사를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 또는 일부를 참가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참가비의 반환은 별표2의 산출식에 따른다. 다만 참가자는 인건비, 시설물 상품제작(생산)비 등 전시관 부스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주관자에게 청구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2022. 12. 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참가비 면제 또는 할인 내역(제5조 관련)

대상	할인율	내용
후원 및 유관기관, 해외기업, B2B기업	면제	- 후원 : 유치보상 기준 적용 - 유관기관 : 참가규정에 부합한 경우 - 해외기업, B2B기업 : 기본부스 1개 ※ 독립부스 신청시 주관사 및 주관대행사와 협의
강원도내 업체	30%	- 조기신청 중복할인 가능 - '22. 4월 이전 도내 주소지 업체
조기신청	20%	- '23. 3월말까지

[별표2]

참가비 반환금 산출(제14조 관련)

참가비 반환금 계산식	비고
$\text{반환금} = \frac{\text{총 납입참가비}}{\text{참가예정일수}} \times \text{잔여참가일수}(\text{참가예정일수} - \text{기 참가일수})$	원단위 절사 반환

산업교류관 운영기준

제정 2021. 10. 26.

일부개정 2022. 9. 27.

일부개정 2022. 12. 2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참가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산업교류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보충사항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산업교류관”은 임산업 관련 제품을 전시 및 판매와 함께 최신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 ② “참가자”는 “전기간 참가자”와 “단기간 참가자”로 구분되며, “전기간 참가자”란 엑스포 전기간(31일)을 참여하는 참가자이며, “단기간 참가자”란 엑스포 기간중 회차별(7일~16일)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한다. 전기간 참가는 후원(협찬) 및 유관기관과 독립부스 참가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부스”란 기본부스와 독립부스를 말하며, “기본부스”는 전시면적(9㎡)과 파티션, 방염파이텍스, 콘센트, 스포트라이트, 상호간판, 안내데스크, 의자1개 등을 제공하고, “독립부스”는 전시면적만 제공하고 부스 설치 및 철거를 참가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한다.

제3조(참가대상 및 기간) ① 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시관명	참가대상 (기관·단체, 법인, 기업 등)	
산업교류관	산림레저 분야	· 등산, 캠핑, 아웃도어, 산악스포츠 관련 제품 등
	청정임산물 분야	· 임산물 및 임산물관련 가공품, 산림 바이오식품, 화장품 등
	목재산업 분야	· 목재, 목조주택, 가구DIY, 목조공예 등
	스마트 산림 분야	· Smart Forest, 산림빅데이터, 4차산업, 스타트업 등
	임산물바이오분야	· 임산물바이오식품, 화장품·뷰티 등
	친 환경 분야	· 친환경과 관련된 생활, 사무, 공예 용품 분야 등
	기 타	· 산림관련 연구/지원 기관 및 단체, 친환경 인증 관련 기업 등

- ② 참가대상의 범위는 유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주관자는 참가대상이 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 ③ 참가기간은 아래와 같이 4회차로 나누어 운영하며, 전기간(31일) 또는 연속하여 참가(최대 2회차, 예시 : 1~2회차 / 3~4회차)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주관자가 참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차		기간	비고
전기간		2023년 9월 22일(금)부터 10월 22일(일)까지 / 31일간	후원/협찬, 독립부스
단기간	1회차	2023년 9월 22일(금)부터 9월 28일(목)까지 / 7일간	최대 2회차 신청가능 (1~2 / 3~4)
	2회차	2023년 9월 29일(금)부터 10월 6일(금)까지 / 8일간	
	3회차	2023년 10월 7일(토)부터 10월 14일(토)까지 / 8일간	
	4회차	2023년 10월 15일(일)부터 10월 22일(일)까지 / 8일간	

- ④ 영업시간은 엑스포 개장시간(10:00 ~ 18:00)을 기본으로 하며,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자와 주관대행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대시설) ① 부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비 잔금 납부 시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대상		금액		비고
전기료	주간	기본 1KW	무료	-
		추가 1KW	50,000원	
	야간	추가 1KW	150,000원	
전화료		60,000원		·신청 기업에 한해 비용 납부 (전화는 국내통화 전용, 해외통화 불가)
인터넷사용료		70,000원		

제5조(전시부스 관리) ① 참가자 중 산업교류관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대행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참가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는 이벤트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②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대행사를 통해 제공하며, 참가자는 당초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 등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가 책임진다.

③ 독립부스 참가자는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에 독립부스 참가이력 및 부스시안을 제공해야 하며, 독립부스 설치 시 현장 설치 이전에 주관자 및 주관대행사와 시설, 전시 등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후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참가자가 처리한다.

제6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전기간 참가자 및 1차 단기간 참가자는 ‘23. 9. 20. 10:00부터 9. 21. 18:00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단기간 참가자는 계약된 전시 일정 전일 19:00부터 21:00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참가자가 이에 대한 이행을 아니할 시에는 해당 참가자의 참가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장치 및 전시품 반출) ① 참가자는 ‘23. 10. 22. 폐막식 후부터 10. 23. 13:00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참가자는 계약된 참가 종료일 18:00부터 19:00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 폐기물 등을 반출하여 전시 부스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